

[대만] 2017년 4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(통관) 「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法(수입식품체계성검사실시법)」 수정 초안 발표

※ 자료원 :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2017년 5월 2일 수정 (部授食字第1061300919號)

※ 2014년 2월 21일 제정(部授食字第1021351939호), 10월 17일 수정(部授食字第1031302519호)

○ 「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(수입식품체계성검사실시법)」 수정 요점 정리

- ① 제4조 체계성 검사 실시 대상 범위 내 「수산물」 및 「유제품」을 포함시킴으로써 「기타 소 관련 제품」 중 「우유 및 유제품」의 면제 규정을 삭제한다. 체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은 수입 원천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검역 시 원료 원산지 및 제품 위생 증명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신규 추가하였음 (수정 규정은 제3조의 붙임표 참고)
- ② “본 방법 의거 실시하는 체계성 검사 대상 품목은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제1항의 동의 없이는 본 법(식품위생안전관리법)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입신청을 할 수 없다” 는 조항 추가(수정조항은 제4조 참고)
- ③ “제7조 체계성 검사 면제 또는 3년 이상 실지(實地) 검사 대상은 검사기관의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” 는 조항 추가(수정 조항은 제5조 참고)
- ④ “본 방법은 중화민국 106(2017)년 ○월 ○일 수정 발표의 조항이며 별도로 시행일은 정하지 않으면 공고일로 부터 즉시 시행」 추가 (수정 조항은 제8조 참고)

○ 「輸入食品系統性查核實施辦法(수입식품체계성검사실시법)」 전문의 수정부분 확인

제1조 : 본 방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.

제2조 : 본 방법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

- 체계성 검사 : 수출국(지)의 식품위생안전관리 체계와 정부기관의 감독조치에 대한 검사

- 검사기관 :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를 가리킴
- 서면심사 : 수출국(지) 정부 기관이 제공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정부기관의 감독 처리한 관련 자료에 대해 검사를 실시
- 실지(實地)검사 : 수출국(지)에 검사 인원을 파견하여 그 식품위생관리 체계에 대해 체계성 검사를 실시

제3조 : 체계성 검사 실시 범위는 <붙임표>와 같다

제4조 : 체계성 검사는 수출국(지) 정부기관이 대만 검사기관에게 신청하며,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를 진행한다. 필요시 서면 심사 후 실지검사를 진행하며 평가검토를 통해 그 식품위생관리 체계성 및 정부기관 감독 조치가 대만과 동등한 효율성이 있는 지 확인 후 수출국의 수입 신청에 동의한다.

검사기관이 진행 전 서면 심사 시, 심사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국(지) 정부기관에 제한기한 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

=== > 체계성 검사는 수출국(지) 정부기관이 대만 검사기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,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를 진행한다. 필요시 서면 심사 후 실지검사를 진행하며 평가검토를 통해 그 식품위생관리 체계성 및 정부기관 감독 조치가 대만과 동등한 효율성이 있는 지 확인 후 수출국의 수입 신청에 동의한다.

검사기관이 진행 전 서면 심사 시, 심사 요구사항에 따라 수출국(지) 정부기관에 지정기한 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

본 방법에 의거 실시하는 체계성 검사 대상 제품은 제 7조 경우 외 제1항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본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다

제5조 체계성 검사를 완료한 수출국(지) 또는 제7조에 의해 체계성 검사 면제된 대상인 경우에도 아래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 또는 실지 검사를 재진행하여 수출국(지)의 관리 체계성이 대만과 동등한 효율성이 있는 지 확인한다

- 수출국(지) 식품위생안전관리 체계 및 정부기관 검역 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
- 수출국 내에 중요한 식품 위생 안전 사건이 발생 시
- 수출국(지) 대만 또는 기타 국가 관련 제품이 수입검사 시 엄중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- 기타 수출국(지)식품 및 그 관련 제품이 유해성이 있는 식품위생안전의 문제로 인정된 경우

==> 체계성 검사를 완료한 수출국(지) 또는 제7조에 의해 체계성 검사가 면제된 대상인 경우에도 아래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검사기관은 서면 심사 또는 실지 검사를 요구하여 수출국(지)의 관리 체계성이 대만과 동등한 효율성이 있는 지 확인한다

- 수출국(지)식품위생안전관리 체계 및 정부기관 검역 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
- 수출국 내에 중요한 식품 위생 안전 사건이 발생 시
- 수출국(지) 대만 또는 기타 국가 관련 제품이 수입검사 시 엄중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- 제7조 체계성 검사 면제 또는 3년 이상 실지 검사 대상은 검사기관의 필요한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
- 기타 수출국(지)식품 및 그 관련 제품이 유해성이 있는 식품위생안전의 문제로 인정된 경우

제6조 실지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(지)에 제한기간 내 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대만 검사기관에 심사하며, 필요 시 개선 상황에 대한 재차 실지검사를 진행한다. 또한 수출국(지)에게 재차 심사비용을 부담하게 한다

제7조 본 방법에 의거 실시된 계통성 검사 제품 중, 본 방법 실시 전 기존 수입 기록이 있는 경우 기존 수입 범위 내 계통성 검사 신청을 면제 한다.

제8조 본 방법은 공고일부터 즉시 시행 한다

==> 본 방법은 중화민국 106(2017)년 0월 0일 수정 발표의 조항이며 별도로 시행일은 정하지 않으면 공고일로 부터 즉시 시행 한다

<붙임표>

종 류	항 목	비 고
육류제품	세계관세기구(WCO)가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번호(HS CODE)의 02, 0504, 1601, 1602에 속한 상품	왼쪽 칸에 열거된 상품 중 수입규정인 F01 또는 F02에 해당하는 상품 양서류, 파충류, 영장류, 수생 포유동물류 등 기타 축산동물류 및 그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것, 실지 계통성 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
수산물	세계관세기구(WCO)가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번호(HS CODE)의 03, 1604, 1605에 속한 상품	왼쪽 칸에 열거된 상품 중 수입규정인 F01 또는 F02에 해당하는 상품 본 해당 제품은 107(2018)년 1월 1일부터 실시
유제품	세계관세기구(WCO)가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번호(HS CODE)의 0401, 0402, 0403, 0404, 0405, 0406, 9806에 속한 상품	왼쪽 칸에 열거된 상품 중 수입규정인 F01 또는 F02에 해당하는 상품 본 해당 제품은 107(2018)년 1월 1일부터 실시
기타 牛와 관련 제품	광우병(spongiform encephalopathy) 이 발생된 국가의 육류 제품이 아닌 기타 소와 관련된 식품은 (체계성 검사 대상에) 불 포함	본 칸에 열거된 아래 항목은 체계성 검사 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1.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은 소 기름 및 기타 연생물 2. 단백질 또는 유지질의 탄산수소칼륨이 포함되지 않은 것 3. 소 원가죽 등 4. 소 원가죽으로 제조된 젤라틴과 콜라겐 5. <u>광우병 미발생 국가의 소 관련 제품의 소 관련 원료 또는 기존 광우병 발생 국가 원료에 대한 계통성 감사가 완료된 것은 원료 원산지 증명 및 제품 위생 안전 자료를 첨부해야 함</u>

- 시사점

본 방법은 2014년 대만 식품 안전문제 원천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수출 국가의 위생 안전 관리 체계성에 대한 검사방법이며 최근 수정된 초안은 검사대상의 범위를 확장 시키고 원산지 증명 추가보강 등 보다 상세화 되고 엄격해졌음. 본 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육류품, 수산물, 유제품, 소 관련 제품의 HS CODE를 기준으로 체계성 검사 대상여부를 확인하고, 관련 규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라벨링) 대만 식품기구, 식품용기 또는 포장 표기 관련 규정」 7월 1일 실시
 - 2017년 7월 1일부터 식품 접촉면에 폴리염화비닐(PVC) 및 폴리염화비닐리덴(PVDC)등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 판매 전 그 품명, 재질명칭, 내열온도, 제조상, 제조일자 및 중복사용 또는 1회 사용 등의 내용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하였고 특히「고온, 고지방의 식품 접촉 사용 불가」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
 - 식품용기 라벨링 표기 방식

품명 : ○ ○

중량, 용량

재질명칭 :

내열온도 :

제조상 :

전화번호 :

주소 :

원산지 :

제조일자 :

* 사용상의 주의 사항 및 담당기관의 공고 사항 표기

- "본 상품은 식품과 접촉되는 용기임"

- "본 상품은 재활용 사용이 가능함"

- "본 상품은 "고온, 고지방의 식품과 직접 접촉 불가"

2. 기타 주의사항 및 시사점

- 식품 용기 및 포장에 대한 라벨링 준수규정에 대한 이해와 대비 필요
- 자료원 :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 (2017.4.27)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[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]

※ KATI 통관문제사례 EXCEL 양식으로 제출(별첨)